

의안번호	2203153
의 퇴 인	권영진의원
회 답 일	2024.11.11
추 계 번호	24B3110
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사무 처리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6,100만원, 2030년 3억 8,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18억 2,700만원(연평균 3억 6,5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위원회의 사무처리 위탁 신설 (안 제79조의3)	361	350	361	372	383	1,827	36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79조의3 신설 (위원회의 사무처리 위탁)	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국토안전관리원법」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(이하 “국토안전관리원”이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		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2항)	의무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79조의3 신설 (위원회의 사무처리 위탁)	○	• (추계) 국토교통부 제출안을 바탕으로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때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며, 사무국 설치비용은 인건비, 운영비, 시스템 구축·운영비용으로 하며, 관리원 내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별도의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 - 개정안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3명의 인건비, 운영비, 자산취득비로 구성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¹⁾ 적용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과 사업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1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(2024.11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3.2	3.6	3.9	3.8	3.8	3.8	3.8
명목임금상승률(%)	3.2	3.6	3.9	3.8	3.8	3.8	3.8
공공기관 기관부담요율(%)	11.124	11.124	11.186	11.250	11.314	11.406	11.500
자산취득비(천원)	6,740	6,888	7,033	7,188	7,339	7,493	7,650

-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국 인원 3인의 인건비와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를 합산하여 산출
- (인건비) 필요인원 3인은 국토안전관리원 평균보수에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산정함
 - 인건비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을 적용함
 - 사무국 필요인원 3인의 인건비는 직급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국토안전관리원의 1인당 평균보수 5,124만원(공공기관 알리미 참고, 2024년 예산기준²⁾)
 - 기관부담금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기관부담비율 적용

[표 2] 인건비 단가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평균보수(a)	55	57	59	62	64
기관부담금(b)	6	7	7	7	7
인건비(a+b)	61	64	66	69	71

주: 국토안전관리원 1인당 평균보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(2024년 예산 기준) 공시자료 참고

2) 직원보수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국토안전관리원의 일반정규직, 무기계약직, 신입사원 초임의 2024년 1인당 평균보수를 바탕으로 함

[표 3] 인건비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인건비	184	191	198	206	214	99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□ (운영비) 국토교통부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1억 5,000만원으로 가정함

○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
[표 4] 운영비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운영비	156	159	163	166	169	813

□ (자산취득비) 사업 첫 해 3인에 대한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

[표 5] 자산취득비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자산취득비	21	-	-	-	-	21

□ (추계결과) 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함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3억 6,100만원, 2030년 3억 8,300만원 등 5년 동안 총 18억 2,7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6]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사무 위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인건비	184	191	198	206	214	993
사무국 운영비용	156	159	163	166	169	813
자산취득비	21	-	-	-	-	21
합 계	361	350	361	372	383	1,82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안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로 실제 사업계획이 확정될 경우 소요비용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배아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